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0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강기윤 · 구자근
권성동 · 박덕흠 · 서병수
이종배 · 윤창현 · 최형두
홍준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,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다수의 피부미용업소가 처벌을 감수하고 온열기, 초음파자극기, 고주파자극기,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,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, 미용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

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순수한 미용목적으로 얼굴, 머리, 피부 및 손톱·발톱 등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또는 「전파법」에 따라 인증 등을 받는 제품이나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에 해당하는 기구·기계·장치·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(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).
- 나.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도록 함(안 제4조제4항제2호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미용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).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미용기기”란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얼굴, 머리, 피부 및 손톱·발톱 등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·기계·장치·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제외한다.

가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,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

나. 「전파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,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은 제품

다.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

제4조제4항제2호 전단 중 “미용기구”를 “미용기기”로, “기구”를 각각 “기기”로, “면도기는”을 “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, 면도기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미용기구”를 “미용기기”로 한다.

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3(미용기기의 기준규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용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, 형상 또는 구조,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미용기기 사용을 위하여 미용업의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기준규격과 제2항의 사용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의4(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) ① 미용업을 하는 자는 업무상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 또는 개조한 미용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미용업을 하는 자는 업무상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용기기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련 전문가·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미용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

하고,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⑤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·방법,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·방법 및 위탁의 대상·방법, 제4항에 따른 회수 절차·방법,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조 또는 개조한 미용기기를 사용한 자

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

6. 제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미용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9. <u>“미용기기”란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얼굴, 머리, 피부 및 손톱·발톱 등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·기계·장치·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제외한다.</u> 가. <u>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,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</u> 을 받은 제품 나. <u>「전파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,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은 제품</u>

② (생 략) 제4조(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) ① ~ ③ (생 략)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1. (생 략) 2. <u>미용기구</u>는 소독을 한 <u>기구</u>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<u>기구</u>로 분리하여 보관하고, <u>면도기</u>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. 이 경우 <u>미용기구</u>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3. (생 략) ⑤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다.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4조(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미용기기</u>-----<u>기기</u>-----<u>기기</u>-----<u>신체에</u> <u>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</u> <u>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</u> <u>사용하여야 하며, 면도기는</u>----- ----- -----<u>미</u> <u>용기기</u>----- -----. 3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3(<u>미용기기의 기준규격</u> <u>등</u>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</u> <u>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</u> <u>요하다고 인정하는 미용기기에</u> <u>대하여 그 적용범위, 형상 또는</u>
---	---

<신 설>

구조,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미용기기 사용을 위하여 미용업의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기준규격과 제2항의 사용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4(미용기기의 안전관리

등) ① 미용업을 하는 자는 업무상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 또는 개조한 미용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미용업을 하는 자는 업무상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용기기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

제20조(벌칙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

시하고, 조사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련 전문가·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미용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⑤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·방법,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·방법 및 위탁의 대상·방법, 제4항에 따른 회수 절차·방법,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 제2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~ 6. (생략)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<u>변조 또는 개조한 미용기기를 사용한 자</u> ③ (현행과 같음) 제2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<u>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제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<u>미용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